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상담요청 출석통지(2회차) 불응 및 연락두절로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9. 8.



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

- 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- 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 (생년월일)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김** (2004. 8. 10.)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	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 수립 의무 불이행	○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철회	폐문부재	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(이하 생략)

- 4. 공고기간: 2026. 9. 8. ~ 2026. 9. 22.(15일간)
- 5. 기타사항은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양경훈 (☎031-828-099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